

교원 산업체 연수 규정

2003. 06. 27. 전면 개정

2009. 08. 01. 전면 개정

2021. 02. 01. 부분 개정

2021. 09. 01. 부분 개정

제1조(목적) 교원들이 산업체 연수에 참여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내용과 실무를 체득하고, 교원들의 전문 지식을 산업체의 신기술 개발에 적극 지원하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중심교육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간)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동계 또는 하계 방학기간 중 4주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대상자)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방법) 연수 대상자는 해당 전공 교과목과 연계성이 있는 산업체를 선정하고 연수 업체와 연수과제, 연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5조(범위) 연수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단, 고용인원 5명 이상인 산업체)

1.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2. 해당 학과의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산업체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제6조(신청절차) 산업체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원은 산업체 연수 신청서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장을 거쳐 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01.>

제7조(대상자 선정 절차) ①주무부서장이 연수 신청서를 접수받고 직업교육혁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부서장이 선정한다.<개정 2021.02.01., 2021.09.01>

②주무부서장은 심의선정 결과를 신청교원 및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기준) 연수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변동으로 인한 학과의 요구
2. 선정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연수실적 경과기간이 오래된 자
3. 산업체 근무경력이 재임 후 일정기간 경과한 자
4. 학과의 진로와 연계성이 높은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자

제9조(경비) ①연수기간 중의 필요경비 및 실험, 실습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수비의 일부를 지급한다.

②연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연수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연수 교원은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체 연수 결과서를 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연수비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09.01.>

제11조(연수결과관리) 연수 참여자는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무부서에서 연수 결과물을 취합하여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발간한다.<개정 2021.02.01.>

제12조(업적평가) 연수에 참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업적 평가 시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